

법학전문대학원 Search & Recruit Committee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)에 국·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설치된 Search & Recruit Committee(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)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등)

-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의 원장이 된다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본 대학원의 교무부대학원장과 학생부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각 전공별·출신별 균형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

- ①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원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신규임용이 필요한 분야의 교원 후보자의 발굴 및 추천에 관한 사항
 - 3. 교원 채용공고·광고 문안 및 광고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② 본 위원회는 신규임용이 필요한 각 전공 교수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소집 및 의결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1.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- 2.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
-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